「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의안번호 1024)

2012. 9.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24)」에 대한 의견

[의견]

-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기업 범위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기업이 아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사'로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
 - 2011년 「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됐지 만 타 법령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 규제를 받고 있어 피해가 증가

중견기업 정의

중견기업 정의는 산업발전법(제10조의 2항), 동법시행령(제3조의 2항)에 의함.

-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 참고
- 어음법 개정안은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중견기업도 규제를 받게 되어 금융비용이 증가, 자금난을 심화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중견기업을 대기업처럼 규제하는 것은 중견기업의 성장 을 저해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할 것
- 중견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의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u><신설></u>	제34조 ③「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일람출급* 환어 음의 발행인인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일정한 기일이 30 일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일람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인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일정한 기일이 30일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의 결제방식의 일종으로 만기의 연월일을 지정하지 않고 수취인 기타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의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한 날이 만기가 되어 지 급을 행하는 방식임. 즉, 만기에 대해 기재가 없는 어음을 말함.

[사유]

1. 법률 간 충돌: 기업규모에 따른 정의 불일치

- □ 어음법 개정안은 규모에 따른 기업분류를 「산업발전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제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는 기업을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 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발전법상 기업은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어음법 개정안은 대기업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조에 따른 대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대 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됨

○ 이에 따라 어음법 개정안과 산업발전법은 대기업 정의를 서로 다 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 충돌이 발생

[표 1] 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의 기업정의 비교

산업발전법	상생법
제10조의 2 ① 정부는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u>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제2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 른 중소기업을 말 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 증가할 것

- □ 어음법 개정의 목적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 소하기 위함
- □ 어음법 개정안은 대기업을 「상생법」으로 정의하고 있어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게 될 것
 - 어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
 -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수는 총 1,291개에 이르고 있으며, 중견기 업 중 약 86%가 매출액 5천억원 미만임

[표 2] 매출액별 중견기업 현황(2010년말 기준)

	1천억 미만	1천억~ 3천억 미만	3천억~ 5천억 미만	5천억~ 1조 미만	1조 이상	총계
기업 수	605(46.9%)	351(27.2%)	154(11.9%)	104(8.1%)	77(6.0%)	1,291

※ 자료: 지식경제부

이러한 중견기업은 어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게 될 것임

3. 금융비용 부담 증가로 현금흐름을 악화시켜 성장을 저해할 것

- □ 현행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은 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반 면,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되어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현행 하도급법 제2조 ③항은 수급사업자 범위를 중소기업자로 제 한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표 3]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및 대급지급 규정

조항	내용
제2조 ②항 원사업자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가 아닌자로서 중소기업자 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 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 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제2조 ③항 수급사업자	1.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하도급법 제2조 2항)
제13조 ①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 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 중견기업이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지불할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반면, 수급사업자로서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60일 이상 소요

따라서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거래대금을 빨리 주고 늦게 받는"
 상황에 처해 있어 금융비용이 상승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사례 참조)

(P사 사례>

- 주요 원사업자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한국 GM, 쌍용자동 차, 르노삼성, 대우버스 등
- 원사업자 중 상당수가 외담채와 어음(120일)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현금 결제의 경우에도 현대와 기아(15~30일 이내)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들은 90~120일
- 재하도급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결제기준 준수 <금융비용산정>
- 할인이자율 (이자율) : 6.8% / 1년
- 하도급 대금관련 금액: 연 2,133억원(2011년 기준)
- ㅇ 금융부담액 :
 - 1) 현금 및 수표기준 (기회비용 : 90일 기준) [640억(하도급매출)+64억(부가세 10%)]×6.8%/365일×(90-60)일
 - = 3.9억 (60일기준 대비 기회손실)
 - 2) 어음기준 (120일 기준) [277억(하도급매출)+28억(부가세 10%)]×6.8%/365일×(120-60)일
 - = 3.4억 (60일 기준대비 금융비용)
- 하도급 대금지급기일 60일 기준과 비교할 때 약 7.3억 금융비용 발생
- □ 여기에 어음법 개정안 개정을 통해 만기일을 30일로 규제하는 것은 중견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중견기업의 현금흐름을 더욱 악 화시킬 것으로 예상
- □ 이러한 중견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어음법을 개정할 경우 중

견기업의 금융비용은 더욱 증가하고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

□ 이러한 자금난 가중은 중견기업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며, 나아가 투자를 어렵게 하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할 것

[개선방안]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며, 대기업 범위를 「공 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u><신설></u>	제34조 ③「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일람출급* 환어 음의 발행인인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일정한 기일이 30 일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일람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인 경우에 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일정한 기일이 30일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의 결제방식의 일종으로 만기의 연월일을 지정하지 않고 수취인 기타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의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한 날이 만기가 되어 지 급을 행하는 방식임. 즉, 만기에 대해 기재가 없는 어음을 말함.

[별첨] 중견기업의 범위

□ 중견기업 범위는 규모기준, 상한기준, 독립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중견기업으로 분류

기 준	해당업종	적용시기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 초과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 원 초과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매출액 300억 원 초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상시 근로자수 200명 이상이고 매출액 200억 원 초과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유예기간을 부여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이고 매출액 100억 원 초과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이고 매출액 50억 원 초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모든 업종	해당즉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모든 업종	해당즉시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모든 업종	해당즉시
3년간 평균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모든 업종	해당즉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	모든 업종	해당즉시
최대주주인 기업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모든 업종	해당즉시

[※] 단,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제외